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7일

영동읍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도 *수	도 *수 1995-03-04	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1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0-25

권지환부명, 상거주지 전업
D10여명